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트러스톤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</u> 2. <u>트러스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</u> 3. <u>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</u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F클래스 수익증권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 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트러스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</u> 2. <u>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</u> 3. <u>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</u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F클래스 수익증권 : <u>퇴직연금</u>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<p>②(생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두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 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두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

<p>른다.</p> <p><u>가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나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다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	<p>른다.</p> <p><삭 제></p> <p><u>가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<u>나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<u>다.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 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하로 한다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40조의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